

소방시설공사업

■ 업무내용

전문소방시설공사업		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
일반소방 시설공사업	기계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
	전기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·정비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·개설·이전 및 정비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1억원 이상	1억원 이상

2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자본금	기본 출자 좌수
소방시설공사업	1억원	40좌 (20,000,000 원 이상)
※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		

3. 시설 · 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4. 기술능력

업종		기술인력
전문소방시설공사업		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취득한 사람 1명) 이상 보조기술인력 : 2명 이상
일반소방 시설공사업	기계분야	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: 1명 이상
	전기분야	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: 1명 이상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정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하며,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